

## <개 정 대 비 표>

1. 대상 약관 :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약관
2. 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<b>제 3 조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1 호~2 호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3.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농어민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<u>200 만원</u>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<u>200 만원</u>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2.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 3 조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1 호~2 호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삭제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<b>400 만원</b>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<b>400 만원</b>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~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농어민 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 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</p>	<p>서민형, 농어민 과세특례 변경 사항 반영</p>
<p><b>제 10 조(중도해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(제 11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.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</p>	<p><b>제 10 조(중도해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<b>고객이</b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(제 11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<b>고객이</b>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.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</p>	<p>중도 인출 반영</p>

<p>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청년 나.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제 1 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	<p>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청년 나. 제 3 조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</p> <p>라. 제 3 조제 2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농어민</p> <p>2. 제 1 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: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 년이 되는 날</p> <p>②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(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, 이하 “납입원금”이라 한다)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,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납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④ &lt;현행 2 항과 같음&gt;</p> <p>⑤ &lt;현행 3 항과 같음&gt;</p>	
<p><b>제 13 조(수수료)</b></p> <p>① &lt;생략&gt;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,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.</p> <p>③~⑦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.</p>	<p><b>제 13 조(수수료)</b></p> <p>①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,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.</p> <p>③~⑦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산의 인출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.</p>	<p>자구수정</p> <p>중도인출 반영</p>

<p><b>제 14 조(투자결과 등의 통보)</b>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투자일임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.</p> <p>1.~3. &lt;생략&gt;  <u>&lt;신설&gt;</u>  4. &lt;생략&gt;  5. &lt;생략&gt;  6. &lt;생략&gt;</p>	<p><b>제 14 조(투자결과 등의 통보)</b>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투자일임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.</p> <p>1.~3. &lt;현행과 같음&gt;  4. <b>중도인출이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내역</b>  5. &lt;현행과 같음&gt;  6. &lt;현행과 같음&gt;  7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	<p>중도인출 반영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 22 조(약관의 적용)</b></p>	<p><b>제 22 조(관계법규등 준용)</b></p>	<p>자구수정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[별지]</b>  1.웹서비스명: KEB 하나 1Q 일임형 ISA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65 695 969 1302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세 부 내 용 ( 원 / % 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저가입(계약)금액</td> <td>100 만원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부과기준</td> <td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(계약)금액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탁자산 평균잔액(√표시)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</td> <td>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납부일</td> <td>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연체수수료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그 밖의 사항</td> <td><u>&lt;신 설&gt;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<u>수수료 면제 사항</u>  : 분기말 및 (중도)해지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.</p>	구 분	세 부 내 용 ( 원 / % )	최저가입(계약)금액	100 만원	수수료 부과기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(계약)금액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탁자산 평균잔액(√표시)	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	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	수수료 납부일	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	연체수수료	없음	그 밖의 사항	<u>&lt;신 설&gt;</u>	<p><b>[별지]</b>  1.웹서비스명: KEB 하나 1Q 일임형 ISA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16 676 1821 1390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세 부 내 용 ( 원 / % 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최저가입(계약)금액</td> <td>100 만원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부과기준</td> <td><b>예탁자산 평균잔액</b>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</td> <td>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</td> </tr> <tr> <td>수수료 납부일</td> <td>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</td> </tr> <tr> <td>연체수수료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그 밖의 사항</td> <td><b>1.분기말 및 (중도)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</b> <b>2.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&lt;삭 제&gt;</p>	구 분	세 부 내 용 ( 원 / % )	최저가입(계약)금액	100 만원	수수료 부과기준	<b>예탁자산 평균잔액</b>	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	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	수수료 납부일	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	연체수수료	없음	그 밖의 사항	<b>1.분기말 및 (중도)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</b> <b>2.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</b>	<p>수수료 징수기준 명시</p>
구 분	세 부 내 용 ( 원 / %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최저가입(계약)금액	100 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 부과기준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입(계약)금액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탁자산 평균잔액(√표시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	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 납부일	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체수수료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사항	<u>&lt;신 설&gt;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세 부 내 용 ( 원 / % 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최저가입(계약)금액	100 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 부과기준	<b>예탁자산 평균잔액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(후취) ( )는 온라인 수수료	KEB 하나 1Q 일임형 ISA 최저위험 : 연 0.1%(0.1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저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2%(0.2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중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4%(0.3%)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고위험(포커스/밸런스) : 연 0.5%(0.4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수료 납부일	매 분기 다음달 5 영업일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체수수료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사항	<b>1.분기말 및 (중도)해지 시 수수료 차감한 평가금액이 원금 미만일 경우 해당 수수료 면제</b> <b>2.중도인출 시 수수료는 계약해지일 또는 해당 분기 다음달 납부일 중 빠른 날에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